

평창군세감명안

의안번호	221
------	-----

제출년월일 : 2001. 9.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난 7. 22 ~ 7. 23. 이틀간 봉평면 등 우리 군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수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금번 수해로 인한 주요 피해내역 중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은 주택침수 24동, 이재민 28명, 농경지 유실·매몰 60ha 및 이에 따른 피해농가 334가구로(유실·매몰 동시발생 시 2가구로 집계) 이중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254명(총건수 412명)이며, 이는 주민세 224명, 1,105천원 종합토지세 218명, 6,194천원 총 412명 7,299천원으로 두 세목이 중복되는 대상자는 188명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

다. 관계부처 승인 : 필요없음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획

I. 감면 대상(피해현황)

- 주택 침수 24동, 이재민 28명
- 농경지 유실·매몰 60ha 334가구

II. 감면 기준

【표1】 피해 내역별 감면 기준

(단위 : 명)

구분	세목	피해내역별	세액별	비고
전액감면	주민세	주택침수 이재민 농경지 유실·매몰	구분없음	224
전액감면	종합토지세	주택침수 이재민 농경지 유실·매몰	종토세 10만원 이하	206
일부감면	종합토지세	주택침수 이재민 농경지 유실·매몰	종토세 10만원 초과 (10만원 정액 감면)	12

III 개인별 감면 내역

- 주민세 : 224명(1,105,000원)
- 종합토지세 : 218명(6,194,060원)
- ⇒ 총 442명 / 7,299,060원

【표2】 읍·면별 감면내역 집계표

(단위 : 명, 원)

구분 읍면	합계		세목별 감면 내역				비고
	인원	금액	주민세		종합토지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42	7,299,060	224	1,105,000	218	6,194,060	
방림면	1	100,000	-	-	1	100,000	
대화면	6	260,170	-	-	6	260,170	
봉평면	321	5,420,520	161	795,000	160	4,625,520	
용평면	65	761,410	38	185,000	27	576,410	
진부면	49	756,960	25	125,000	24	631,960	

※종합토지세는 총소유 토지의 읍·면 건재순으로 부과 되어 방림, 대화면 포함.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 ①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
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
를 조사할 수 있다.